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12. 15.
관광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2 :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장 석 화)

제안 이유

○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군지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의용소방대의 설립 및 임용권을 도지사로 일원화(안 제2조, 제10조, 제12조)
-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통일 (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운영주체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안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35조)
- 의용소방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수당·활동보조비·보상금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규정 마련 (안 제22조 내지 제29조)
- 재해보상금의 피청구자 및 결정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 (안 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

(관광건설전문위원 윤기복)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그동안 시와 군지역이 이원화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을 일원화 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제5조 제3호 "대장·부대장의 정년"과 제31조 제4항 "도 및 시·군연합회장의 정년"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하며
- 제14조의 해임사유 중 "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한 것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수정 이유

-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4조 (해임사유)의 조문 중

□해임하여야 하며,□를 □해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를 삭제한다.

- 안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4항의 조문 중

“63세”를 “65세”로 한다.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12. 2.

제안자 : 송은섭 의원의

수정 이유

-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4조 (해임사유)의 조문 중

해임하여야 하며,를 해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를 삭제한다.

- 안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4항의 조문 중

“63세”를 “65세”로 한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4조 (해임사유)의 조문 중

□해임하여야 하며,□를 □해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를 삭제한다.

○ 안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4항의 조문 중

“63세”를 “65세”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u>해임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u> <u>나야 한다.</u></p> <p>1. ~ 7. (생략)</p>	<p>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u>해임하여야 한다.</u> (삭제)</p> <p>1. ~ 7. (개정안과 같음)</p>
<p>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p> <p>① ~ ③ (생략)</p> <p>④도 및 시·군연합회장은 정년은 <u>63세</u>로 한다.</p> <p>⑤ (생략)</p>	<p>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p> <p>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도 및 시·군연합회장은 정년은 <u>65세</u>로 한다.</p> <p>⑤ (개정안과 같음)</p>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의소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 읍·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시, 읍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 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읍, 면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③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지역대라 한다.

제4조(의소대의 표지) ①의소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②의소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 기,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③의소대의 표지와 현판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의소대(여성대, 지역대를 포함한다)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4호·제5호에 해당 하는 자는 우선 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2.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3.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0세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5세로 할 수 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제6조(조직) ①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②여성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③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통할 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여성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여성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의소대 또는 지역대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

②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소대의 정원) ①시,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면지역의 의소대(여성대 포함)는 30명으로 한다. 다만,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②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용

제10조(대원의 임용) ①대장(여성대장 포함)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이하 대원은 소속 대의 대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여성대장, 지역대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소대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①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②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대원의 신분증명) ①임용권자는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임용권자는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복무의무)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라 한다)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 관서에 출동대기 근무를 할 수 있다.

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복제) ①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부착 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5와 같다.

②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③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등 안전 장구류는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④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5-1과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⑦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5-2와 같다.

⑧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검열)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3월과 11월)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2회 이상, 소방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제23조(출동수당) ①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4조(활동보조비 등)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군 행정예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와 시·군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년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재해보상 청구) ①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①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도연합회 구성은 시·군지역 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하며, 시·군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

③도연합회장은 시·군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시·군연합회장은 각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

④도 및 시·군연합회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도 및 시·군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소대 친목도모
2. 의소대간의 협력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도는 도연합회와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은 시·군연합회가 시·군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여성대 포함)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연합회장 정년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 설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의 근무 등)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